

제318회 임시회
2013.3.15.(금)

심 사 보 고 서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3. 3. 7.(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3년 2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2월 26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3월 7일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강호동)

가. 제안이유

- 지역특화 와인산업 육성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이며, 집중적으로 와인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과
- 도내 200여개의 노동조합 회원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 받았으나,
- 와인연구소 부속건물 신축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장소 변경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의결을 구하려고 함.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 변경》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 46-1 일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사업규모
 - 부지 : 13필지 29,357㎡
 - 건물 : 연구동 1,200㎡(지상2층), 관리사 250㎡(지상 2층), 창고 220㎡(지상 1층)
- 사 업 비 : 2,900백만원(광특 1,450, 도비 1,450)

※ 변경내역

- 사업규모 : 연구동 1,200㎡ → 연구동 1,200㎡, 관리사 250㎡, 창고 220㎡
- 사 업 비 : 2,300백만원 → 2,900백만원
- 변경사유 :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와인연구소 부속건물 신축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1 일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4. 3.
- 사업규모
 - 부지매입 : 5필지 2,354㎡

(단위:원,㎡)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5필지		2,354	642,485,000	
1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1	임야	614	179,595,000	
2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7	임야	771	225,517,500	
3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8	임야	734	214,695,000	
4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2	임야	86	8,299,000	
5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9	임야	149	14,378,500	

- 건물신축 : 연면적 1,150㎡(지상3층)
- 사 업 비 : 2,520백만원(국비 875, 도비 1,645)

※ 변경내역

- 위 치 :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92-2 →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1등 5필지
- 부지면적 : 1,650㎡ → 2,354㎡(증 704㎡)
- 사 업 비 : 2,500백만원 → 2,520백만원
- 변경사유 : 접근이 용이하고 부지의 규모 확대가 가능한 지역 선정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지역특화 와인산업 육성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의결 받은 와인연구소 신축안에 확보된 예산 6억원(광특 3억원, 도비 3억원)으로 관리동과 창고를 추가로 신축하는 것과
- 도내 55만여명 근로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도 차원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함에 있어 건립부지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92-2에서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1등 5필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 등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제459호

제출연월일 : 2013년 2월 2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역특화 와인산업 육성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이며, 집중적으로 와인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과
- 도내 200여개의 노동조합 회원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 받았으나,
- 와인연구소 부속건물 신축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장소 변경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 변경》

- 위치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 46-1 일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사업규모
 - 부지 : 13필지 29,357㎡
 - 건물 : 연구동 1,200㎡(지상2층), 관리사 250㎡(지상 2층), 창고 220㎡(지상 1층)
- 사업비 : 2,900백만원(광특 1,450, 도비 1,450)

※ 변경내역

- 사업규모 : 연구동 1,200㎡ → 연구동 1,200㎡, 관리사 250㎡, 창고 220㎡
- 사업비 : 2,300백만원 → 2,900백만원
- 변경사유 :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와인연구소 부속건물 신축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1 일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4. 3.
- 사업규모

- 부지매입 : 5필지 2,354m²

(단위:원,m²)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5필지		2,354	642,485,000	
1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1	임야	614	179,595,000	
2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7	임야	771	225,517,500	
3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8	임야	734	214,695,000	
4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2	임야	86	8,299,000	
5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9	임야	149	14,378,500	

- 건물신축 : 연면적 1,150m²(지상3층)

- 사 업 비 : 2,520백만원(국비 875, 도비 1,645)

※ 변경내역

- 위 치 :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92-2 →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1등 5필지
- 부지면적 : 1,650m² → 2,354m²(증 704m²)
- 사 업 비 : 2,500백만원 → 2,520백만원
- 변경사유 : 접근이 용이하고 부지의 규모 확대가 가능한 지역 선정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 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1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 건	2,354	642,485				
	건물	2 건	1,620	2,477,515				
	기타							
1	토지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1번지 등 5필지	2,354	642,485	2013. 3.~ 4.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주)근화 종합개발	
	건물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1번지 등 3필지	1,150	1,877,515	2014. 3.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	신축
	기타							
2	토지							
	건물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46-1번지 일원	470	600,000	2013.12	와인연구소 부속건물 신축	-	신축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